



당 현장은 NATM터널, TBM터널, SHIELD 터널, 수직구 2개소, 해양방류관 등으로 공 종이 세분화된 공사로 1997년 11월 20일 착공하여 민원 등 제반 여건에 의거 1999년 1월 15 일 공사재개후, 하수급인이 주관하여 1999년 3월 30일 제1회 안전기원제를 실시하였으며, 2000년도에 하수급인 주관하에 안전기원제를 3회 시행하였습니다.

하수급인 주관하에 2회(2000. 2. 11 실드수직구, 2000. 10. 6 실드터널) 실시하고, 또 다른 하수급인 주관하에 1회 (2000. 9. 6 NATM 터널) 실시하였는 바 상기 실시회수가 년간 2회이상 규정에 위배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2000-17호)에 의거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년 2회 이하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 현장에서 2000년도 중 3회 실시는 동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회사는 외국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회사로서 얼마전 외국인이 미국제 보안경을 가지고 와 국내에서 착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외국 인증기관으로부터 검정 받은 제품을 국내 검정기관에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보안경종류 : 일반보안경(무색)

- 제조업체 : WILLSON(ANSI:Z87.1:검정승인번호 같습니다.)
- 제조업체 : CREWS(ANSI:Z87.1/94.3)



외국의 검정기관에서 검정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국내에 수입된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성능검정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 판매, 대여 또는 전열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제1항 단서 및 보호구성능검정규정(노동부고시 제2000-15호) 제12조에 의거 외국 공인기관의 검정방법 및 기준 등이 동 규정에서 정한 것과 동등이상 일때는 시험성적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검정기관에 제출하면 해당 검정항목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사업부지 외부에 협력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가설숙소(컨테이너)를 협력업체가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 가설숙소에서의 화재, 갑전 또는 기타재해의 발생으로 인한 상해, 사망 등의 사고시 시공사의 책임이 있는지, 또는 책임이 있다면 책임의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가설컨테이너에서 화재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의 의무 이행 책임이 있으며, 시공사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당해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50명의 A라는 회사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직원 80명인 계열 B회사의 안전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이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B회사의 안전관리자는 별도 선임되어 있으며 A회사와 B회사는 대기업의 협력 업무를 같은 구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장단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게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동 제도는 산업재해방지의 본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나 사업주에게만 의무를 부여하고, 달리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산업재해예방 효과가 미흡할 수 있으므로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업무의 참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내의 자주적이고 효율적인 안전활동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A회사와 B회사가 계열회사이고 동일구내에서 대기업의 협력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사업장 단위로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미검정 불량가설기자재 추방대책에 따라 지난 8월에 자진신고를 하여 한국건설가설협회로부터 성능검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출장비, 성능검사비용, 스티커 발급비용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동 기준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함으로,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한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을 받기 위해 비용이 소요된다면 동 비용에 대해서는 동 기준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기준 및 내역』 중 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근 경기북부지방에 유행성 출혈열이 급증하는바, 당건설현장은 하절기 침수지역으로서 풀밭 등 유행성 출혈열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전직원을 대상으로 예방주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접종비용을 안전관리비(건설현장)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만약 처리가 가능하다면, 그 대상이 전근로자 및 현장에 근무하는 전인원(사업주 및 감리단 직원 포함) 접종이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사업장의 소재 장소에서 일반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발병할 수 있는 질병 등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의서에 나열된 접종가능자 중 감리단 직원은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